

보건실운영규정

제정 2013.03.01 1차 개정 2022.02.28
2차 개정 2022.10.0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“이라 한다.)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관리와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실(이하 “보건실“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보건실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일반 건강상태 검사(혈압, 체온, 맥박, 시력, 체중 등 검사)
2. 간단한 외상치료
3. 응급약 투여(급체, 초기감기, 복통, 두통 등)
4. 운동경기 등 학교 행사시 의료반 출장
5. 환경위생의 관리 및 예방
6. 보건교육
7. 학교보건에 대한 연구
8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평가와 건강상담, 진료의 알선
9.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보건실에는 보건실장 1인과 간호인력(간호사) 약간 명을 둔다. <개정 2022.2.28.>

②보건실장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보건실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통솔하여 보건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업무분장) 보건실의 제반업무는 학생복지팀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10.4.>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보건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실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.)를 둔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보건실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

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혁신본부장, 보건실장, 총무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. <개정 2022.10.4.>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재정) ①보건실의 재정은 본 대학 교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②보건실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7조(기타) 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